
택시운송사업 주요 질의 회신집

2016. 5.

**국 토 교 통 부
[신 교 통 개 발 과]**

한 보상차원에서 개인이 독립하여 택시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 여기서 사업용 자동차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기종기호가 '04'인 지게차는 일반도로가 아닌 건설현장 또는 공장 내부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개인택시 면허제도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음.
-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제2015-272호, 2015.2.1.)한 건설기계를 살펴보면 기종기호가 “26저”인 트럭지게차임

* 관련 : 신교통개발과-117(2016.1.12.)호

질의 19

- 본인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건설기계 지게차를 운영 중에 있음. 사업자등록증에는 종류(건설), 종목(중기 대여업)으로 되어 있고,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지게차 일감이 줄어서 개인택시로 전환하고자 함. 경력을 쌓으려면 3년간 다마스 (밴)을 사서 화물 용달협회에서 경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함.
- 내가 지게차만 하다 보니 경험도 없고 해서 당분간 용달화물 일을 해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현재 본업으로 하고 있는 지게차 일을 같이 하다보면 용달화물을 아르바이트 식으로 잠깐씩 하다보면 부가세를 적게 낼 정도로 일을 할 수 있음.
- 이렇게 되면 개인택시 양수 요건이 되는 3년 경력을 쌓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함. 최소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여 얼마만큼의 최소 부가세를 납부해야 개인택시를 양수하는 요건이 되는지?
- 그리고, 일반과세자 건설(중기대여) 업종을 갖고 있으면서 향후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면 사업자가 2개로 중복되어 개인택시 면허는 취소된다는 말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기존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은 말소를 해야 하는지요
- 현재 사업자등록으로 용달화물자동차 운전일을 겸업해서 생긴 경력은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함.

[답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의 운전경력을 화물자동차를 주업으로 하면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에 전념한 경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게차업과 화물자동차 운전업을 동시에 겸업하면서 틈틈이 시간이 나는대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에 전념하였다고 볼 수 없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전념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지게차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필요는 없음.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자신이 스스로 휴업을 하는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 관련 : 신교통개발파-182(2016.1.18.)호

질의 20

- 개인택시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양수하려는 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는데, 그 화물운수회사가 최근에 폐업을 하여 현재 양수하려는 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임.
- 화물자동차 협회에서도 운전경력증명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화물협회가 발행하는 입·퇴사 확인서 등으로 운전경력증명을 대체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청을 인가할 수 있는지와 아니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다른 대체 서류들이 있는지?

[답변]

-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화물협회가 발행하는 입·퇴사 확인서 등으로 운전경력증명을 대체하여 양도·양수를 인가할지 여부는 관할관청이 판단할 결정할 사항이나, 향후 다른 신청건과의 형평성 논란 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할관청이 운전경력증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